

대구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5189
----------	------

제출년월일 : 2018. 9. 2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3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대구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등 제정 목적을 제시함(안 제1조)
- 나.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의 해촉, 의장의 직무, 회의 운영, 간사 등 규정함
(안 제2조~제5조)
- 다. 분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6조)
- 라. 혁신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 역할 등을 규정함
(안 제7조)
- 마. 협의회 운영시 의견 청취, 조사·연구, 회의록, 수당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2조의 2(※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8. 20. ~ 9. 10.(20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의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④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분과협의회)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8항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 위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실무적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지역혁신기관, 대학, 기업,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각 분과협의회별 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하며, 분과협의회의 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분과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협의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분과협의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7조(혁신연구회) ① 시장은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촉진과 혁신 분위기 확산, 지역 혁신주체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지역혁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회의 위원은 시장이 20명 이내로 위촉한다.
- ③ 연구회는 지역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전략수립, 균형발전 포럼·토론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④ 연구회의 운영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의장 및 분과협의회는 장은 안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나 분과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조사·연구) ① 시장은 협의회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시장은 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혁신연구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혁신연구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협의회 의결을 거쳐 분과협의회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전문위원) 시장은 영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지역혁신지원단에 협의회 심의 안전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제28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시·도협의회는 심의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도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할 시·도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도에서 제11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의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을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시·도협의회와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2조2

제32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협의회"라 한다)는 시·도협의회의 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18.>

② 시·도협의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9. 18.>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해당 시·도 지방의회 의원
5. 해당 시·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도협의회의 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8. 9. 18.>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9. 18.>

⑤ 시·도협의회의 장은 시·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8. 9. 18.>

⑥ 시·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18.>

⑦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도협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1.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시·도 출연·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 세출 사업(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각각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도의 예산신청에 관한 사항
 - 3.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시·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4.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작성·제출하려는 지역발전투자협약안에 관한 사항
 - 5. 제41조제4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통보하는 시·도협회의의 의견에 관한 사항
 - 6.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⑧ 시·도지사는 시·도협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협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8.>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협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9. 18.>
- [전문개정 2014. 3. 11.]
[제목개정 2018. 9. 18.]

제32조의2(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혁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시·도협회의 또는 분과협회의의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 2. 시·도협회의 또는 분과협회의에 부의되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무
- 3. 시·도협회의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
- 4. 시·도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역할 조정 및 연계·협력 촉진에 관한 사무
- 5. 시·도 관할 행정구역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무
- 6. 그 밖에 시·도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지원과 시·도협회의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 ② 혁신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시·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③ 시·도지사는 혁신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혁신지원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3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태익